1. 개정이유

교통신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기술개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통신기술 보호기간의 최장 범위를 ‘5년’에서 ‘8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보호기간을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8년으로 확대하는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교통신기술 활용실적 및 사용협약자 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에 의해 교통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 업무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 위탁됨에 따라 활용실적 제출기관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청인의 특별관리에 관한 근거 규정 변경(안 제9조제1호)

나. 교통신기술의 보호기간을 확대(안 제14조제9항, 제23조제1항)

다. 활용실적 제출 기관 변경(안 제2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동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제16조에 의한 심사위원회”를 “제17조에 의한 기술심사위원회 및 제18조에 의한 현장심사위원회”으로 하고, 제9조제1호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으로 한다.

제14조제9항 중 “5년”을 “8년”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5년”을 “8년”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영 제99조제1항제2호 및 영 제99조제2항의”를 “영 제99조제1항제2호의”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활용실적의 접수)”를 “(활용 실적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진흥원장은 규칙 제46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개발자의 활용실적을 접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를 “교통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보호기간 만료시까지 영 제99조제9항 및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활용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영 제114조의2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기관에 제출하여야야 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신기술 보호기간 범위의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14조제9항 및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지정·고시된 교통신기술로서 이 고시 시행 당시 지정·고시일부터 보호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교통신기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참고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신청인의 특별관리)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재받은 문서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진흥원은 동 내용을 제16조에 의한 심사위원회에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참여제한 기간중에 있는 연구책임자, 연구기관·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제9조(신청인의 특별관리) ----------제17조에 의한 기술심사위원회 및 제18조에 의한 현장심사위원회에----------.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
제14조(현장심사) ⑨ 제7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지정 보호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14조(현장심사) ⑨ ----------8년-----.
제16조(심사위원회) 영 제97조제4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기술심사위원회와 현장심사위원회로 구분한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보호기간) ① 영 제100조제1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보호기간은 현장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23조(보호기간) ① ---------- ---------- ---------- ---------- --8년------.
제25조(우선 적용·구매 권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99조제1항제2호 및 영 제99조제2항의 교통신기술 우선 적용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교통신기술의 목록을 공공기관에 분기별로 통보할 수 있다.	제25조(우선 적용·구매 권고) ① ---------- ---------- 영 제99조제1항제2호의 ---------- ---------- ---------- --------..
제26조(활용실적의 접수) 진흥원장은 규칙 제46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개발자의 활용실적을 접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활용 실적의 제출) 교통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보호기간 만료시까지 영 제99조제9항 및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활용 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영 제114조의2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기관에 제출하여야야 한다.